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경선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543

발의년월일 : 2019년 3월 29일

발 의 자 : 이경선 의원 (1명)

찬 성 자 : 강동길, 김인호, 신정호, 박순규, 이병도, 이승미, 김화숙, 송아량, 박상구, 권순선, 김 경 의원 (11명)

1. 제안이유

○ 옥외광고물 법령에서 광고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나, 법령 및 조례상 개별광고물에 대한 표시방법을 정하지 않은 〃디지털홀로그램과 전자빔〃을 이용한 광고물에 대한 표시방법을 정하고,

○ 벽면이용간판의 표시방법 등에 대하여는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골자

○ 디지털홀로그램과 전자빔을 이용한 광고물 표시 근거 마련 (안 제3조의2 신설)

○ 벽면이용간판의 표시방법 개선·보완

가. 벽면이용간판 허용층수 완화(3층 이하 → 5층 이하)와 입체형 간판의 정의 규정 마련(안 제4조제1항제1호)

나. 세로로 길게 표시하는 벽면이용 입체형 간판의 표시위치에 규정 보완(안 제4조제1항제3호)

다. 건물의 창문과 유리벽의 구분기준의 명확화(안 제4조제1항제7호)

라.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 건물의 1층 출입구 벽면을 이용한 전광류 및 디지털광고물의 표시방법 보완(제4조제3항제2호)

○ 건물벽면을 이용한 현수막의 표시방법 조문정비(안 제11조제2항제1호)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비용추계서 비대상 사유서 별첨)

다. 기　　타 : 신·구조문 대비표 참조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 (디지털홀로그램과 전자빔의 표시방법) ① 영 제3조의2, 제4조제1항제12호 다목 및 제20조에 따른 디지털홀로그램(이하 〃홀로그램〃이라 한다) 또는 전자빔은 영 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각 광고물 등의 표시방법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서울특별시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이하 〃시 심의위원회〃라 한다) 심의를 거쳐 시장이 표시방법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홀로그램 및 전자빔의 영상표시장치 또는 영상표시장치를 거치하기 위한 구조물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도로·인도 또는 그 경계선 안에 있는 시설물 등에 설치할 수 없다. 다만, 보행자나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고 안전성이 확보된 경우에는 시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15일 이내의 기간 동안 설치할 수 있다.
2. 안전이 확보되도록 지면·건물 또는 시설물 등에 견고하게 고정하여

야 한다.

3. 건물의 옥상 또는 내부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옥상난간, 외벽 또는 창문 등의 안쪽에 설치하여야 한다.

제4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3층”을 “5층”으로 하고, 같은 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4층 이상에는 입체형(문자·도형 등을 건물의 벽면 등에 직접 붙이거나 표시하는 것을 말하며, 가로 또는 세로 어느 한 변의 폭이 문자·도형 등의 폭보다 작은 게시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만 표시하여야 한다.

제4조제1항제3호나목 중 “간판”을 “가로로 길게 표시하는 간판”으로, “2분의 1”을 “2분의1”로, “이하(세로로 길게 표시하는 경우에는 가로 2미터 이하, 세로는 건물 높이의 2분의 1 이내로서 최대 10미터 이내)에서 구 심의위원회”를 “이내에서 구 심의위원회의”로 하고, 같은 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세로로 길게 표시하는 간판의 가로크기는 2미터 이내, 세로는 건물 높이의 2분의1 이내로서 최대 10미터 이내에서 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하며, 윗부분은 건물의 가장 높은 층에서 시작하여 아랫부분은 4층 이상 이어야 한다.

제4조제1항제7호 본문 중 “간판이 출입문 또는 창문”을 “간판이「건축법」등 관련규정을 위반하여 창문(개폐기능이 없는 경우를 제외한다)”

으로 하고, 같은 호 단서 중 “이하로”를 “이내로”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제2호 전단 중 “말한다”를 “말하며, 터치스크린 또는 전체화면 면적의 4분의1 이내의 화면·문자 변환은 정지화면으로 본다”로 한다.

제11조제2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벽면에는”을 “벽면에”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표시되었거나 허가증 또는 신고증명서를 발급 받은 광고물등은 이 조례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에 따라 허가·신고 또는 협의·심의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친 것으로 본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3조의2 (디지털홀로그램과 전자빔의 표시방법) ① 영 제3조의2, 제4조제1항제12호 다목 및 제20조에 따른 디지털홀로그램(이하 〃홀로그램〃이라 한다) 또는 전자빔은 영 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각 광고물등의 표시방법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서울특별시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이하 〃시 심의위원회〃라 한다) 심의를 거쳐 시장이 표시방법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홀로그램 및 전자빔의 영상표시장치 또는 영상표시장치를 거치하기 위한 구조물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도로·인도 또는 그 경계선 안에 있는 시설물 등에 설치할 수 없다. 다만, 보행자나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고 안전성이 확보된 경우에는 시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15일 이내의 기간 동안 설치할 수 있다.

	2. 안전이 확보되도록 지면·건물 또는 시설물 등에 견고하게 고정하여야 한다. 3. 건물의 옥상 또는 내부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옥상난간, 외벽 또는 창문 등의 안쪽에 설치하여야 한다.
제4조(벽면 이용 간판의 표시방법) ① 영 제20조제2항에 따른 벽면 이용 간판(이하 이 조에서 “간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1. 건물 3층 이하의 벽면에 하나의 업소에 하나의 간판을 표시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벽면 이용 간판의 표시방법) ① ----------. 1. -- 5층 ----------.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4층 이상에는 입체형(문자·도형 등을 건물의 벽면 등에 직접 붙이거나 표시하는 것을 말하며, 가로 또는 세로 어느 한 변의 폭이 문자·도형 등의 폭보다 작은 게시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만 표시하여야 한다.
가. ~ 다. (생 략)	가. ~ 다. (현행과 같음)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4층 이상 건물의 가장 높은 층(옥상난간을 포함한다)에는 당해 건물명이나 당해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의 성명·상호 또는 이를 상징하는 도형을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청장은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 전이라도 허가 또는 신고수리를 할 수 있으며, 건축물의 공사와 함께 게시시설의 설치를 하게 할 수 있다.	3. ----------. ----------.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간판의 가로크기는 건물 폭의 2분의 1 이내, 세로크기는 3미터 이하(세로로 길게 표시하는 경우에는 가로 2미터 이하, 세로는 건물 높이의 2분의 1 이내로서 최대 10미터 이내)에서 구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나. 가로로 길게 표시하는 간판- 2분의 1 ---------- 이내에서 구 심의위원회의 ----------.
<신 설>	다. 세로로 길게 표시하는 간

	판의 가로크기는 2미터 이내, 세로는 건물 높이의 2분의1 이내로서 최대 10미터 이내에서 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하며, 윗부분은 건물의 가장 높은 층에서 시작하여 아랫부분은 4층 이상이어야 한다.
4. ~ 6. (생 략)	4. ~ 6. (현행과 같음)
7. 간판이 출입문 또는 창문을 막아서는 아니 되며, 벽면에 밀착시키되 벽면으로부터의 돌출폭은 30센티미터 이내여야 한다. 다만, 제4호에 따른 간판의 돌출폭은 40센티미터 이내(간판의 돌출폭이 도로위의 공간을 점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70센티미터 이내)로 할 수 있으며, 영 제14조제4항에 따른 전광류 광고물과 디지털 광고물은 180센티미터 이하로 할 수 있다.	7. 간판이 「건축법」 등 관련규정을 위반하여 창문(개폐기능이 없는 경우를 제외한다)----------. ---------- 이내로 --------.
8.·9. (생 략)	8.·9.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전광류 광고물이나 디지털광고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표시할 수 있다. 1. (생 략) 2.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 건물의 1층 출입구 벽면에 그 건물 또는 그 건물을 사용하는 자를 안내하는 내용을 표시하는 하나의 간판으로 표시면적은 2제곱미터 이하로 하며, 빛의 점멸 또는 동영상의 방법으로 표시하여서는 아니 되고, 정지화면(한 화면의 지속시간은 최소 9초 이상, 다른 화면으로의 전환시간은 최대 1초 이내인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9조제1항제4호에 따른 지주 이용 간판과 중복하여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생 략)	③ ----------. 1. (현행과 같음) 2. ---------- 말하며, 터치스크린 또는 전체화면 면적의 4분의1 이내의 화면·문자 변환은 정지화면으로 본다--. ----------. ④ (현행과 같음)
제11조(현수막의 표시방법) ① (생 략) ② 벽면을 이용하는 현수막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제11조(현수막의 표시방법) ① (현행과 같음) ② ----------.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물의 벽면에는 적법하게 설치된 게시시설에만 표시할 수 있으며, 하나의 게시시설에는 하나의 현수막만 표시할 수 있다. 가. ~ 라. (생 략) 2. ~ 4. (생 략) ③·④ (생 략)	1. ---------- 벽면에 ----------. 가. ~ 라. (현행과 같음) 2. ~ 4. (현행과 같음) ③·④ (현행과 같음)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표시되었거나 허가증 또는 신고증명서를 발급 받은 광고물등은 이 조례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에 따라 허가·신고 또는 협의·심의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친 것으로 본다.